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9. 28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2. 9. 13. 고병준 의원 외 9인

나. 회부일자: 2022. 9. 14.

다. 상정일자: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22. 9. 26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고병준 의원】

### 가. 제안이유

마포구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,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등을 정비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에 구의원이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 신설(안 제3조)
- 2) 위원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범위 명확화(안 제3조)

#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#### 가. 개정 목적

- 동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마포구 의원을 심의회 위원에 포함되도록 하고, 마포구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제안되었음.

#### 나. 조문검토

- 안 제3조(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)제3항을 개정하여 위원 위촉대상자를 명시한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변경하고 제1호를 신설하여 ‘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1명’, 제2호를 신설하여 ‘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’으로 개정함.
- 그 밖에 같은 조 제5항을 관련 문맥에 맞게 어순을 정비하고 있으며, 같은 조 제7항은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은 당연히 민간위원의 자격이 아니므로 불필요하게 규정된 문구는 삭제하여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이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조문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해 제안 되었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심의위원회 구성시 외부 민간위원은 물론 마포구 소속 공무원을 위촉 할 경우에도 해당 안전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가급적 배제토록 하는 등 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